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예고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7. 28.

예천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나. 지원 절차(안 제5조)

-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결과 :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반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syyh2000@korea.kr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명품교육 도시에 걸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6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학생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소					

신청인(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인적사항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상품권)	원
------	---	-----------	---

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예천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재학증명서1부. (학교로 신청의 경우 생략 가능) 3. 통장사본 1부. (스쿨뱅킹의 경우 생략 가능)
------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번호, 예금주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사항,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